KOSHA GUIDE

C - 18 - 2015

시행령 제26조의5, 설계변경 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다.

5. 공사단계별 안전·보건 설계기준

5.1 가설공사

(1) 가설 울타리

- (가) 설계자는 건설현장 관리, 주변 지역민원(소음, 분진 등) 및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고려하여 가설울타리 종류 및 규격을 설계에 반영한다.
- (나) 가설울타리 설치 시 집중호우, 강풍 등 악천후 영향을 고려하여 자재 및 규격을 선정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.

(2) 가설전기

- (가) 설계자는 수전설비에서 사용 예정인 전기 기계·기구 등의 사용용량과 위치를 감안하여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가설전선 경로 및 거치계획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.
- (나) 설계자는 가설전기 접지시설은 사용전력별 기준 접지저항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.

5.2 굴착공사

- (1) 현장조사와 설계
 - (가) 설계자는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굴착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장소 주변의 시설물과 지하매설물 등 공사 수행 시 장해요인을 파악하여 붕괴·훼손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설계에 반영한다.
 - (나) 설계 시 지장물에 대한 대책은 위험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반영하고 곤란하거나 불가능 할 경우 방호, 보호 조치 등 차선책을 반영한다.

(2) 굴착공사